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622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1980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7. 11. 1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036,3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36,3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